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CONTENTS

-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 II. 부정청탁의 금지
-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 V. 사례 및 판례
- VI. 맺음말



국민권익위원회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국민권익위원회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입법목적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금지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공직유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업체 직원
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부 감독, 코치•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 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등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건축물 경관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정부에 파견 나온 민간협회 직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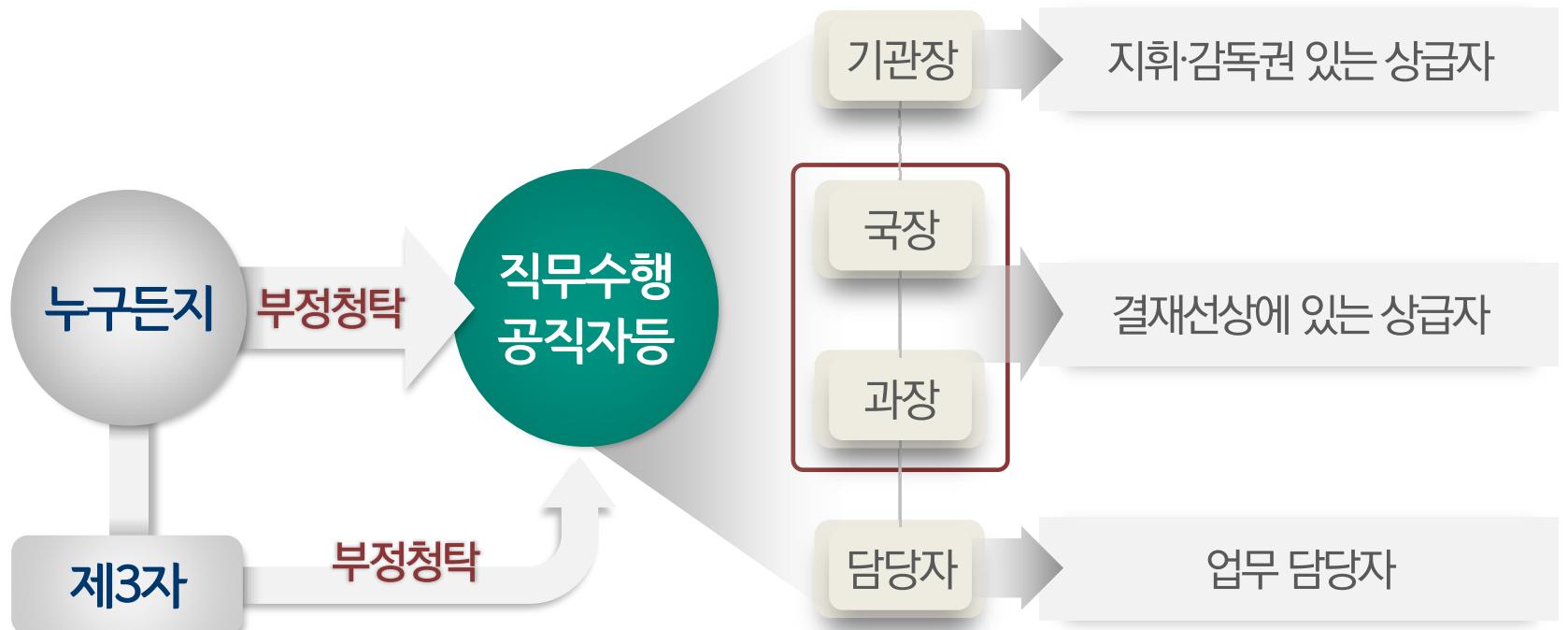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II. 부정청탁의 금지

인사 청탁

1.

3천만원이하
과태료

중앙부처 공직자 A



2.

3천만원이하
과태료



3.

제재대상아님



II. 부정청탁의 금지

보조금 청탁

1.

유증 어려운데
1천만원이하
과태료

어린이집 운영자 A



2.

▲ 긴 어려움에
3천만원이하
과태료

지방의원 B



3.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과장 C



4.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 공무원 D



II. 부정청탁의 금지

위법사항 묵인 청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체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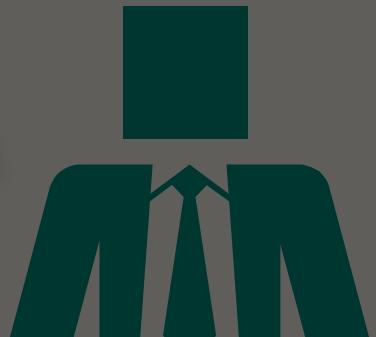
2.

과태료 1천만원

3.

안됩니다!

담당 소방관 C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6.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II.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2호, 제3호]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
-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 공문을 통한 공개적 요구

-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적용대상
- 다만,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 전달 시 예외사유에 해당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직무관련성
有

형사처벌

과태료



직무관련성
無

형사처벌

제재 대상 아님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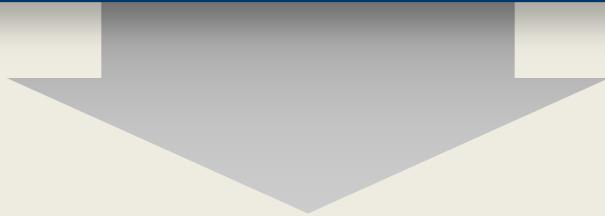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



- 공공기관 이사회 종료 후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 허용
- 기관장이 직원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및 경조사비 : 허용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가액 요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란?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선물

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경조사비

결혼과 장례에 한정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3호, 제4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

-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 직무 내용 및 당사자의 관계
-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 (예시) 서면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O, 사실혼 배우자 X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5호]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

- 친목회 등의 요건 : ①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의사결정 기관·대표자 존재
 ③ 정관·회칙 등 내부규정 존재
 ④ 구성원 전체의 회비 부담
-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허용
- 친목회 회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전별금 제공 : 불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6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공식적 행사** : 행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참석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성, 공식적 초청이 중요
- **통상적 범위** : 다른 유사·동종 행사 제공 수준, 정상적 비용처리절차
- **일률적 제공** : 역할별 합리적 차등 O, 특정 개인·집단에만 제공 X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7호]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판단기준 :** 기관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
→ (판례) 회사 로고가 자수된 수건(2,500원)은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기부금품법**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품 수수
-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학칙 및 그 세부규정**
→ (예시) 공무원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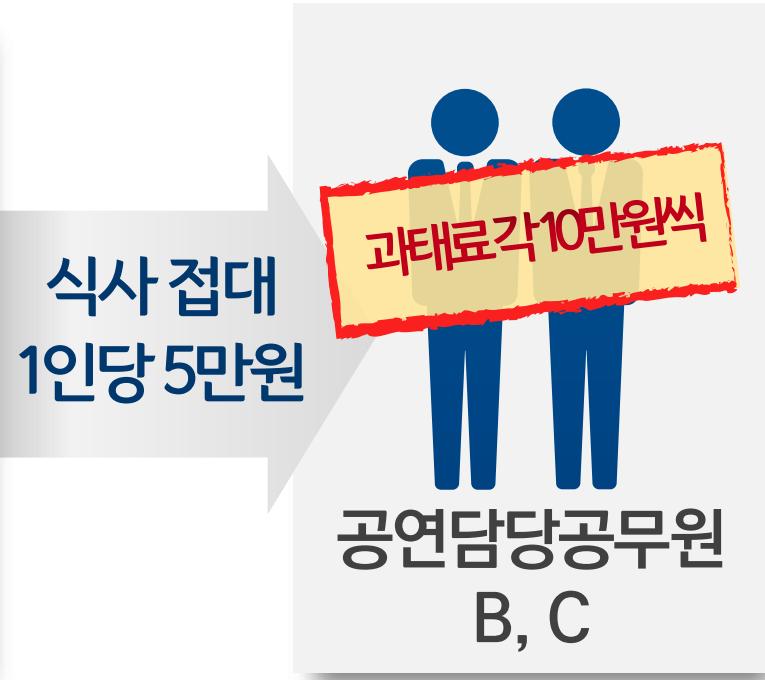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사회상규** :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부족,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 **판단기준** : 당사자간 관계, 직무관련성 내용, 금품내용·가액, 수수 시기·장소, 수수 경위 등
 - 결혼식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
 - 공연 등 취재기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프레스티켓
 - 학생 단체 인솔교사의 무료입장 등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양벌규정



단,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주의감독” 다하면 사업주 면책

(참고) 미국 부패방지법 가이드 상의 사업주 면책사유

부패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 확립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

상시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내부 고발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 구비

부패행위자에 대해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구비

조직 내에 부패방지 책임 담당자 지정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외부강의등

직무 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등 신고

“대가 받지 않아도” 신고

“사전” 신고

사전신고 곤란하면
2일 이내 사후 신고

국가·지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외부강의등의 범위?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분	사립학교, 언론사	장관급 이상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제한 없음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 1회 판단기준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주제)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다름	
같음	같음	다름	같음	
같음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 가능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공직자등의 대응방법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거절·반환**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문서로 신고

1.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3. 신고 경위·이유
4. 위반행위 일시·장소·내용
5. 증거자료



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신고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불이익조치 금지

해고, 전보, 감봉 등
금지

불이익조치하면
형사처벌

책임감면

형벌, 과태료,
징계 등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 금지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보상금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

대상가액의 4~30%
최대 30억원



포상금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

최대 2억원

V

사례 및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Case 1 : 민간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은 법 적용대상 아님

민간인 사이 또는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한하지 않음

Case 2 :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회사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 없다면 허용
 -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처벌 (배우자 처벌 X)

Case 3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 : 공무수행사인 O
-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 : 공무수행사인 X

Case 4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아닌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아니면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금지**

- 판단기준 : 해당 직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지 여부, 직무 내용, 당사자 간 관계 등
- 조사 대상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9천6백원) 제공 → **과태료 2만원 부과**
- 행정심판 사건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1만8백원) 제공 → **과태료 2만2천원 부과**
-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4만5천원) 제공 → **과태료 9만원 부과**

Case 5 :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의 식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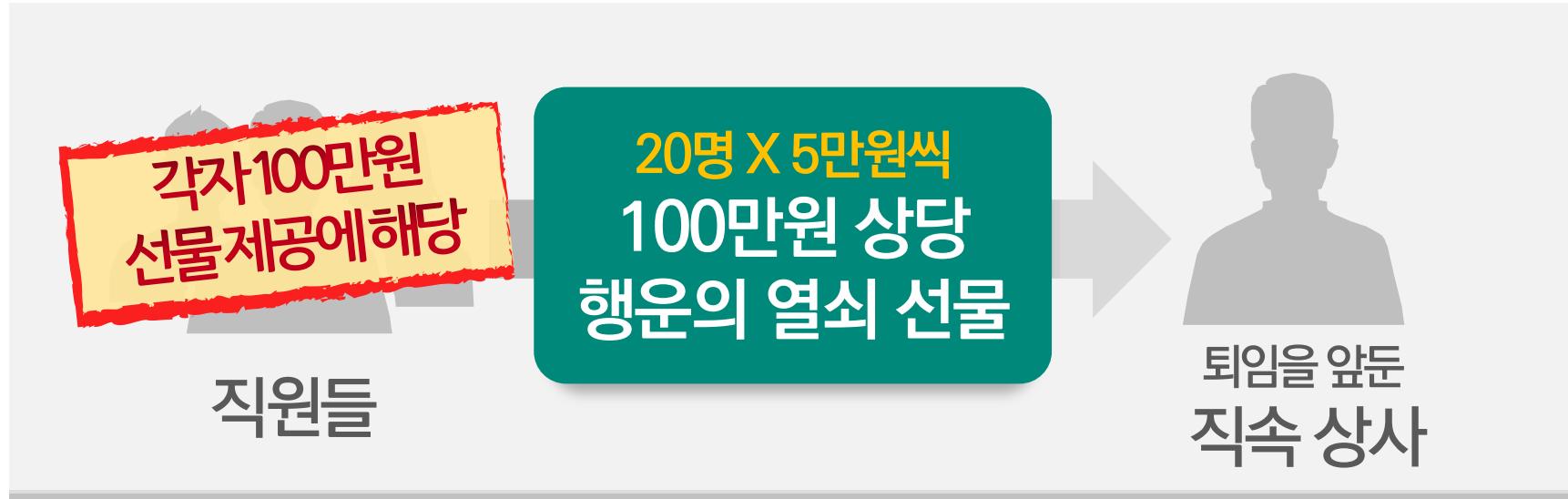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식사비 2만8천원을 몰래 지불
→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므로 음식물 X, 과태료 11만2천원 부과

5만원 외식상품권 제공

→ 5만원 이하 외식상품권 선물 가능하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 회피 목적 이라면 허용되지 않음

V. 사례 및 판례

Case 6 : 퇴직예정자에 대한 선물 (전별금)



여러 사람이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을 주면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각자 합산액 기준으로 처벌

-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Case 7 :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

경조사의 범위 : 결혼과 장례에 한정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승진 축하 난 선물

→ 승진은 경조사가 아니므로,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승진심사기간에 부친상을 당한 인사과장에게 직원이 부조금 10만원 제공

→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

경조사비 15만원을 받은 경우

→ 10만원 기액기준 초과 부분(5만원)만 반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

Case 8 : 공직자등과의 골프라운딩

고향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의 그린피를 내준 경우

→ 직무관련성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가능

공공기관 직원들이 소속기관 소유 골프회원권을 이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서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5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

→ 골프 접대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불가

정상가(비회원가)

35만원

정회원 동반할인가

20만원

15만원 상당

금품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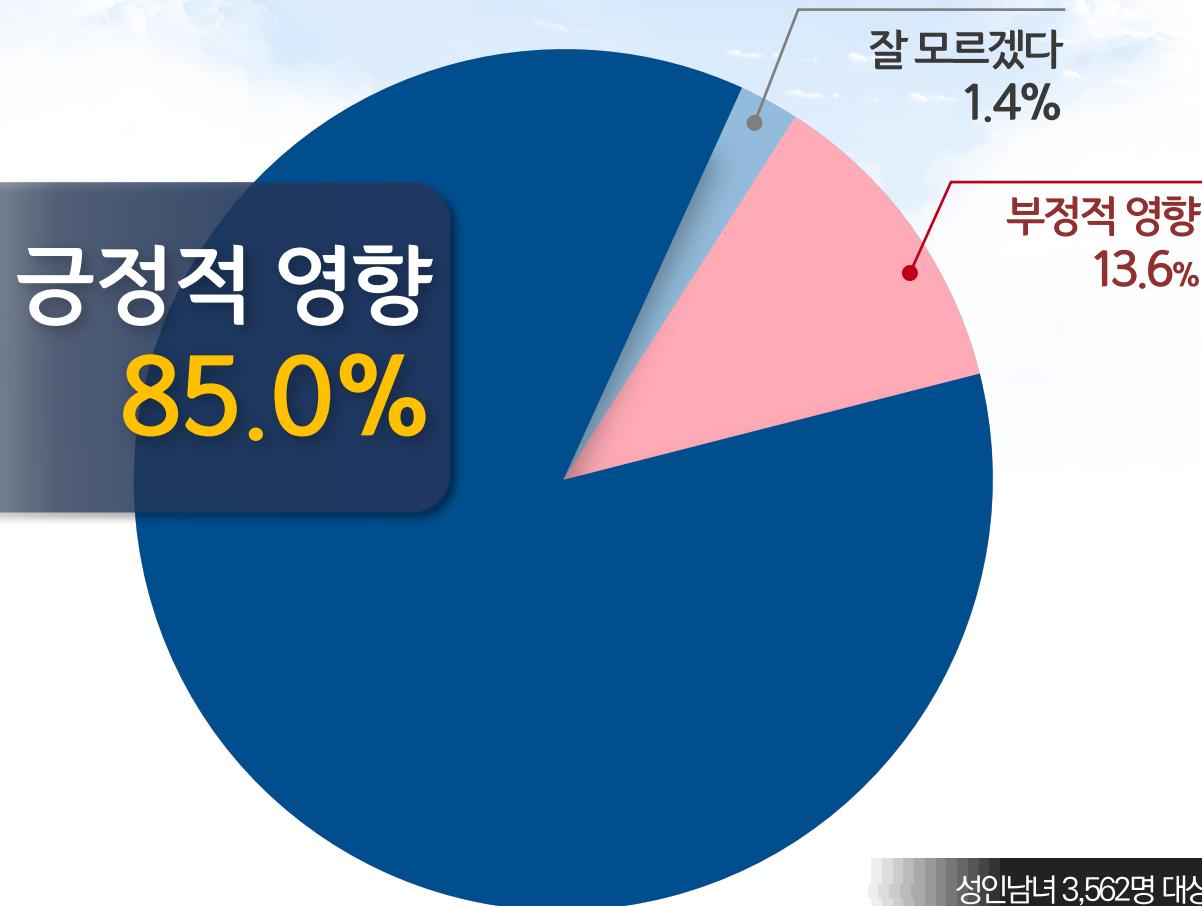
VI

맺음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청탁금지법이 반대대학원생들

논문심사 때 ‘거마비’ 관행 철퇴

학부모, ‘촌지’ 덜었다

불필요한 오해, 상호
사라져…
교육계, 청탁금지법
분위기

생겼다

청탁금지법 이후
‘저녁이 있는 삶’ 생겼다

직장인들, “접대할 시간에
공부하고 가족들과 시간”

주한 외국계 기업 CEO들, 청탁금지법 환영

주한 외국계 상공회의소 소장

연줄에 의존하지 않고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법

외국계 IT기업 임원

청탁금지법은 외국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법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